#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91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강선우 · 김윤덕 · 추미애

서미화 · 김교흥 · 김한규

김 윤•박홍배•박해철

홍기원 · 조승래 · 박희승

정을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 등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고령, 질병 등으로 돌봄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아동, 이른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지원 규정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이들은 가족에 대한 간호, 간병 등으로 본인들의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개별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 3부터 제44조의7까지 신설).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 즉 '가족돌봄아동'의 발굴과 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하여 돌봄서비스·상담 교육·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5 신설).
- 마. 학교의 장 등이 가족돌봄아동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을 가족돌 봄아동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함(안 제44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절(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절 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통합지원

- 제44조의3(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이하 "가족돌봄아동"이라 한다)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가족돌봄아동을 대신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 스 지원
  - 2.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 지원

- 3. 학업 및 진로 교육에 관한 지원
- 4. 질병의 예방ㆍ치료 및 영양 관리 등에 관한 지원
- 5.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 6. 가족돌봄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
- 7. 주거 지원
- 8.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 원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을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지원 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4(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가족돌봄아동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전단의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5(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 봄아동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44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 2.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 3. 가족돌봄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가족돌봄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5. 가족돌봄아동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6.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의 자격, 제3 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44조의6(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학교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학교의 장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가족돌봄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 돌봄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게 가족돌봄아동 지원 프 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쉮터의 장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7(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절 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u>통합지원</u>
<u>&lt;신 설&gt;</u>	제44조의3(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
	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
	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
	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이하
	"가족돌봄아동"이라 한다)을 적
	<u>극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u>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
	족돌봄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실시하
	<u>여야 한다.</u>
	1. 가족돌봄아동을 대신하여 돌
	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
	요한 돌봄서비스 지원
	2.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

담 등 상담 지원

- 3. 학업 및 진로 교육에 관한 지원
- 4. 질병의 예방·치료 및 영양 관리 등에 관한 지원
- 5.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 6. 가족돌봄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
- 7. 주거 지원
- 8.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각종 지원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 족돌봄아동을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지원 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개인
   별 지원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4(가족돌봄아동 실태조 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 돌봄아동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가족돌봄아동 지원 정책수립을

<신 설>

<신 설>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 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 태조사에 전단의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 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 련 법인 • 단체에 대하여 필요 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가족아동돌봄 지원센 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

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44조의3제2항 각 호에 따 른 지원
- 2.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지역사 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 3. 가족돌봄아동 지원 프로그램 의 개발 및 보급
- 4. 가족돌봄아동 지원 프로그램 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5. 가족돌봄아동 지원 우수사례 의 발굴 및 확산
- 6.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
- 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관련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 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신 설>

-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의 자 격,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6(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
  돌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해
  당 아동에게 가족돌봄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게 가족돌봄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한다.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 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

<신 설>

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

   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료기관의 장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 족돌봄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협력체계 구축) 보건복 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 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